

# 日帝初期 鑛業法 改正과 鑛業侵奪 實態

李 培 鎔

1. 序論
2. 1906年 鑛業法制定과 日本의 獨占體制 強化
3. 日帝初期 鑛業權 侵奪의 諸樣相
4. 1915年 鑛業令 公布와 그 影響
5. 結論

## 1. 序 論

1880年代는 開化思想家들에 의해 富國強兵을 위한 論議가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鑛業開發 政策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開鑛되는 鑛山의 수효가 갑작스럽게 증가되면서 그에 따르는 시행착오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 즉 農業에 피해를 줌과 동시에 外國人의 無斷探查 採鑛으로 國內鑛業은 혼란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sup>1)</sup>

이에 1887年 鑛務行政을 전담하는 鑛務局을 설치하고 어수선한 鑛務를 정리하려 하였지만 이렇다할 鑛山調査 報告書나 체계적인 鑛業法 하나 제정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1890年代 점차 開鑛되는 鑛山에 비해 鑛稅 징수의 어려움을 겪자 農商工部에서 砂金開採條例를 發布하였다.<sup>2)</sup>

1895年 5月 全文 47條로된 農商工部令으로 發布하였지만 본격적인 鑛業法은 물론 아니었다. 鑛業全般을 포괄한 것이 아니고 砂金鑛業에만 해당될 뿐 아니라 鑛業을 독립된 분야가 아니고 農業의 부차적인 產業으로 간주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1) 拙稿, 『舊韓末 鑛山利權과 列強』, 韓國研究院, 1984.

2) 全文 47條로 1895年 5月 19日에 發布되었는데 農商工部가 砂金開採에 관한 업무를 管轄하되 그 重點은 鑛稅徵收에 있었고 부수적으로 砂金開採로 인한 現地住民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일정한 配려가 있었다.

한 甲午改革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朝鮮砂金鑛 浸透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896年以後 國內의 有望한 鑛山이 外國人의 손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日人들은 鑛業의 特許權 獲得뿐 아니라 日人官吏들과 技術者들을 農商工部에 침투시켜 韓國鑛業行政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日本은 1905年 統監府 설치후 韓國政府에 강요하여 鑛業法을 公布케 하였다. 1906年 6月에 公布된 鑛業法은 표면적으로는 韓國鑛業을 발달시키기 위한 鑛業行政刷新이지만 내면적으로는 外國人特許鑛業의 進행을 억제하고 日本人들에게 유리한 독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本稿는 日本이 韓國을 植民地化하는 과정에서 韓國鑛山에 대한 侵奪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또한 合併을 前後해서 10年間격으로 公布된 鑛業令은 그 時代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성격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에 따라 과급되는 영향을 분석해보려는 것이다. 이것은 植民地時代 韓國鑛業 全般을 규명하기 위한 試論的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2. 1906年 鑛業法制定과 日本의 獨占體制 強化

1895年 以後 韓國政府는 속수무책으로 列強들에게 鑛山利權을 차례로 빼앗기게 되었다. 列強들은 대체로 鑛地를 정하지 않은 채 우선 특허권을 얻어낸 다음 2年內에 鑛地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韓國政府는 단지 宮內府所屬 鑛山 몇개소만을 지정하여 보호하였을 뿐 韓國全域에 산재한 鑛山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였다. 심지어 列強들은 이러한 韓國政府의 허점을 이용하여 鑛處를 선정하기 위해 試掘한다는 명목으로 아무 곳이나 파헤쳐보고 만일 그곳에서 金이 나오는 경우 稅金을 납부하지 않음은 물론 정식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不法採掘을 감행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이렇게 列強들이 韓國鑛山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을 때 韓國政府는 이

렇다 할 鑛業法 하나 마련치 못하고 無定見한 政策으로 일관하였다. 皇室은 皇室대로 外國人에게 特許를 내주고 皇室收入을 증액시키는데만 급급하였을 뿐 正작 國家的인 안목에서 鑛業政策을 수립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00年以後 日本이 점차 韓國에서 세력권을 장악하면서 鑛山業務는 거의 日本의 手中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 1906年의 鑛業法이다. 그러니까 1906年 6월에 發表된 鑛業法은 韓國政府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라 日本의 필요에 의해 日本人의 손으로 作成된 것이다.

처음부터 列強들은 韓國鑛山 利權을 획득하여 채굴하면서 韓國에 아직 내세울만한 鑛業法이 없음을 간파하고 기왕이면 그들에게 유리한 법령을 작성하여 韓國政府에 제시하고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예가 1904年 英·伊·白이 공동으로 마련한 鑛業法 草案이다. 이것은 韓國에 적용하려는 최초의 鑛業法 草案이었다. 英國이 淸國에 제시하였던 鑛業法을 기초로 하여 당시 韓國政府에 鑛山特許權을 교섭중이던 伊太利 및 벨기에와 협의하여, 草案을 만들어 日本政府의 의사를 타진하였다. 英國人「커리」(Currie), 伊太利人「모나코」(Monaco), 벨기에人「빈카르」(Vincart)가 합의하여 만든 鑛業法 草案은 全文 16條로 되어 있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sup>3)</sup>

- ① 韓國鑛山을 各國 資本에 開放하자는 主意.
- ② 鑛山事業에 必要한 造營物, 道路, 土地, 建物 등에 대한 各稅 租稅를 면제 하자는 것.
- ③ 鑛山經營에 必要한 재료는 海關稅를 면제하자는 규정.
- ④ 本規則 發表後 2個年間은 韓國人이나 條約을 맺은 各國人이 동등하게 1個 所 以上의 鑛山特許를 얻을 권리를 줄 것.
- ⑤ 試掘許可는 全國을 통해 효력을 갖게 할 것과 試掘한 後 探掘地를 出願하면 20日 以內에 허가해 줄 것.

3) 『日本外交文書』 37~1, 文書番號 623.

⑥ 試掘期限은 3年으로 정하고 또한 2年을 더 연장해 줄 것과 採掘特許期限은 30年으로 정할 것.

⑦ 鑛區는 金·銀·銅의 경우 30里. 鑛稅는 金·銀·銅의 경우는 每年 순이익의 5%로 정함.

英國이 鑛業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殷山金鑛外에 遂安金鑛의 特許를 얻으려고 이 시기에 교섭을 추진하고 있었고, 伊太利·벨기에도 鑛山을 요구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이었다. 즉 그들의 목적이 일치되어 그들에게 유리한 鑛業法을 만들어 韓國政府에 권유하려 한 것이다.

한편 日本政府도 對韓政策 중 日本의 利權을 위해 韓國鑛業法 制定의 필요성을 느껴 鑛山技術者들로 하여금 韓國鑛山을 세밀히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英·伊·白이 제시한 鑛業法 草案에 대해 日本은 몇가지 대책을 세우고 韓國에 駐在하는 自國의 外交官들에게 示達하였다.<sup>4)</sup> 즉 英·伊·白 등의 계획에 동조하든지 저지하든지의 與否에 대해서는 선불리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확답할 것과 그에 수반해서 정밀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중에서 유망한 광산 몇 개소는 미리 日本의 手中에 넣고 그 외의 鑛山에 대해서만 外國人에게 許與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英·伊·白의 鑛業法 草案을 토대로 결점을 보충하는 등의 수정을 거친 다음 鑛業法案을 마련하여 적당한 時期를 보아 發布하기로 방침을 세웠다.<sup>5)</sup>

英·伊·白의 鑛業法 草案에 대한 日本측 立場을 要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試掘問題에 대한 의견으로 원칙적으로 試掘과 採掘의 구별을 철폐할 것을 기본적으로 정하였다. 이와 함께 20日 以內에 試掘에 대한 허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나라의 주권을 간섭하는 처사이므로 부당하며 또한 鑛業出願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조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원서처리기간은 8개월로 할 것과 試掘期限도 2年으로 제한할 것 등을

4) 『同上』 文書番號 624.

5) 『同上』 文書番號 625.

주장하였다. 둘째 租借期限은 30年으로 정하고, 셋째 鑛區는 石炭鑛만 1萬坪 以上으로 하고 다른 鑛物은 5千坪 以上 모두 60萬坪을 초과하지 말 것과, 넷째 鑛業稅는 內外國人의 差等を 두지 말고 一律적으로 生産高의 1/100 稅로 할 것과 다섯째 鑛業出願때 반드시 出願者의 住所·國籍·要望하는 鑛區·鑛物·鑛區圖를 첨부할 것을 명시하였다.<sup>6)</sup>

鑛業法은 주로 1904年 末부터 日本 農商務省에서 起草하였는데 이 때 만들어진 草案을 가지고 巨智部가 1905年 6月 韓國 農商工部 顧問으로 내정되어 來韓하였다. 巨智部가 부임하자 본격적인 法案審議에 착수하였다. 法案審議는 統監府의 參與官이며 農商工部次官인 木內重四郎과 黑岩休太郎 技師, 目賀田 度支部顧問, 農商工部 鑛山事務局 顧問인 巨智部博士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韓國政府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統監 伊藤博文은 1906年 4月에 韓國施政改善에 관한 協議 案件으로 鑛業法案을 제시하면서 韓國 內閣大臣들의 意見을 形式的으로나마 물은 적이 있으나, 당시 參政大臣 朴齊純을 비롯한 韓國大臣들은 日本이 作成한 鑛業法案 중에서 鑛業法 및 施行細則의 규정에 의거한 處分은 統監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과 內外國人에게 동등한 資格을 부여한다는 방침에 異議를 제기하였다. 韓國측이 제시한 修正案은 첫째 外國人의 경우에만 統監의 승인을 거칠 것, 둘째 鑛山에 관한 權利는 韓國人 우선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토대로 하여 그 절차에 있어서는 韓國人이 먼저 權利를 획득한 후 다시 日本人에게 讓渡할 수 있으며 그것을 다시 外國人에게 移轉하는 形式으로 探掘權을 許可해야 한다는 主張이었다. 그러나 伊藤統監은 韓國大臣들이 法律的 素養없이 名分論에만 집착하여 오히려 鑛山行政에 혼잡만 초래할 것이라고 一言之下에 묵살하였다.<sup>7)</sup>

6) 『同上』 文書番號 626; 『統監府來文』 (奎) 17849~2, 1905年 4月.

7) 『日韓外交資料集成』 6 (上), <日韓併合編>, 「韓國施政改善=關スル協議會 第六回」, pp. 222~230. 第五回, pp. 211~213. 『制度局鑛業書類』 (奎) 21935, 1906年 6月 29日條.

條국 鑛業法은 1906年 6月 29日 法律 第3號로 公布되었다. 全文 32條로 되어 있으며 同年 9月 15日부터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sup>8)</sup> 形式上으로는 韓國議政府와 農商工部 名義로 發表되었지만 實際적으로는 統監府에서 관장하였다.

鑛業法의 主要內容은 ① 鑛區의 境界는 直線으로 定하고 地表境界線의 直下를 限하며 그 面積은 石炭에 있어서는 五萬坪 以上 其他 鑛物에 있어서는 五千坪으로 하되 모두 百萬坪을 超過하지 못함(第4條). ② 皇城 및 離宮의 周圍 三百間 以內와 火巢以內의 處所는 鑛區로 하지 못하며 所轄 官廳의 許可를 받지 않으면 鑛業을 위해 使用할 수 없음(第5條). ③ 鑛業을 請願하는 者가 同一地에 二人 以上이 있을 때는 請願書到達日의 先者에게 許可함. 同日에 到達하는 者에 대해서는 農商工部大臣이 適當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허가함(第8條). ④ 鑛業權은 農商工部大臣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賣買, 讓與 또한 抵當할 수 있으나 다만 鑛業權은 相續할 수 있음(第10條. 이 條項은 1908年 7月 2日 法律 第11號로 改正되었는데 鑛業權은 相續, “讓渡하고 또는 抵當할 수 있음”으로 고쳐졌다). ⑤ 鑛業請源 또는 鑛業을 爲하여 他人의 土地에 犯入하여 測量 또는 調査할 必要로 하는 者는 農商工部大臣에게 그 認可를 請求할 수 있고 認可書를 携帶하는 者에 대해서는 그 土地所有者 또는 關係人은 이를 拒絕하지 못함. 단 測量과 調査를 위해 損害가 發生할 때는 請求者는 그 賠償을 行할 것(第14條). ⑥ 鑛產權者는 鑛產稅 및 鑛區稅를 捧納할 것. 즉 鑛產稅는 鑛產物價格의 百分之一로, 鑛區稅는 鑛區 每 1千坪에 1個年 50錢으로 함. 단 1千坪 未滿者는 1千坪으로 하며 許可後 滿 1個年間의 鑛區稅는 前項全額의 半額으로 함(第19條). ⑦ 宮內府所屬 鑛山은 勅令으로 告示하며 宮內府所屬 鑛山을 採掘하고자 하는 者에 대해서는 本法規定을 適用치 아니함(第25條. 이 條項은 1907年 8月 8日 勅令 第3號로 一部

8)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Ⅳ, pp. 590~595.

〈25 個 鑛區〉 宮內府所屬 鑛山이 폐지되었다). ⑧ 本法 및 施行細則의 規定에 있는 處分은 外國人에 關係함이 많은 故로 日本國 統監의 同意를 거쳐야 함. 또한 宮內府所屬 鑛山에 關係해서도 마찬가지임. (第 27 條. 이 條項은 1908 年 3 月 16 日 法律 第 4 號로 改正되었는데 “外國人에 關係함이 많은 故로”를 삭제하고 대신 각 條項의 農商工部大臣의 處分은 日本國 統監의 處分으로 바뀌어졌다) 등이었다. 이 외에도 鑛業許可를 取消하는 경우를 限定하였고 鑛業權者와 土地所有者의 關係를 규정하여 土地問題가 發生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鑛業法이 公布된 後 1906 年 9 月에는 布達 第 138 號로 帝室鑛山規程을 폐지하였고<sup>9)</sup> 1907 年 8 月에는 勅令 第 3 號로 26 個處의 宮內府所屬 鑛山을 폐지하였다. 또한 1906 年 8 月에는 勅令 第 38 號로 全文 9 條로 된 農商工部所管 鑛山事務局官制를 公布하여 職員 中에 日本國 學術家의 招聘을 규정하고 있었다.<sup>10)</sup>

日本人 統監 伊藤博文이 韓國으로 하여금 鑛業法을 發布케 한 의도는 첫째 既存 宮內府所屬 鑛山制度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韓國鑛山을 차지할 目的이었다. 그리하여 宮內府所屬 51 個 鑛山 中 26 個 鑛區만을 皇室直營으로 남겨 두게 되었고 그나마 統監府의 엄격한 規制를 받았다. 또한 鑛業權이 讓渡·抵當의 目的물로 使用되어 鑛業權을 획득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日本人들에게 특히 資金融通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둘째는 國內外人의 區別을 撤去함으로써 日本人과 歐美人이 韓國鑛業 採掘에 진출할 수 있도록 門戶를 開放하였다. 즉 歐美資本과 日本의 提携方針을 재 확인한 것이며 內·外人에게 균등한 鑛業權 享有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었다. 이후로 日本人들은 鑛業許可件數 中 거의 2/3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1906 年 6 月 29 日 鑛業法을 公布한 後 7 月 11 日 農商工部令 第 43 號로 鑛業法 施行細則을 發表하였다. 또한 同年 7 月 24 日 法律 第 4

9) 『同上』 V, 布達 第 138 號 「帝室鑛山規程廢止」, 1906 年 9 月 11 日.

10) 『同上』 V, 勅令 第 38 號 「農商工部所管 鑛山事務局 官制」, 1906 年 8 月 9 日.

號로 砂鑛採取法을 公布하였다.<sup>11)</sup> 모두 全文 18條로 되었는데 前記 鑛業法과 함께 9月 15日부터 施行토록 하였다. 즉 砂鑛者는 砂金, 砂錫 및 砂鐵을 일컫는다 하여(第1條) 별도로 砂鑛採取法을 規정한 것이다.

그 基本內容을 보면 中央 및 地方行政機關이 砂金開採를 行政面에서 促進하는 事務規定, 鑛稅의 徵收機構와 節次를 상세히 規定하고 있었다. 또한 砂金에만 採取稅의 納付를 規정하였는데 採取許可區 1千坪 河床延長 每1町에 1個年 1圓으로 하였다(第11條). 이와 같이 統監府가 특별히 砂金鑛業에 대하여 세밀한 徵稅規定을 適用하고 있는 것은 採取한 砂金이 韓國人 사이에 私的 流通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對日輸出量을 增加시키기 위한 方便이었다.

참고로 1909年 韓國內의 鑛業權 取得者의 現況을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種別	國籍	日人	韓人	韓日人 共	英人	美人	日美人 共	獨人	佛人	日獨人 共	伊人	計
鑛業		246	48	11	4	7	6	6	1	1	1	337
砂鑛業		66	22	15	1	1			1			101
計		312	70	26	5	8	6	6	2	1	2	438

위의 도표에서 보면 당시 매우 엄청난 숫자의 外國인들이 韓國鑛山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鑛業法 制定以後 朝鮮鑛業界는 혼란을 면치 못하였다. 統監府에서 鑛業權 특허의 남발로 鑛業申請이 폭주하였던 것이다. 특히 內外國人의 차별을 철폐한 결과로 엄청난 수의 外國인이 韓國鑛山에 현저히 진출하게 되었다. 그들은 資本金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우선 特許權만 확보해 놓으려는 속셈이었다. 일단 權利를 얻은 다음에는 資本主를 물색하기에 급급하였고 利益配當을 확보한 다음에는 轉賣하는 事

11) 『同上』Ⅳ, 法律 第4號「砂鑛採取法」.

12) 『日本外交文書』42~1, 「韓國關係雜纂」, 文書番號. 147, 1909年 10月 8日.

例가 속출하였다.

外國人중에서는 물론 日本人들이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鑛業法이 日本의 鑛業權 독점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日本人들은 경험과 資本이 성숙되지도 못한 채 試掘한다는 명목으로 全國鑛山을 유린하여 現地民과 마찰을 빚었다. 그들은 權利金條로 폭리를 취하거나 다른 外國人 資本과 共同經營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당시 韓國人 鑛業者들이 노출된 金鑛에만 치중하여 별 이득을 올리지 못하는데 비해 日人들은 金銀鑛뿐 아니라 黑鉛·銅鑛·鐵鑛·石炭鑛 등 다양하게 鑛域을 확대하였다.<sup>13)</sup> 또한 韓國人 鑛業家에 접근하여 기존 광업권을 탈취하였을 뿐 아니라 재래식 기술로 韓國人들이 採金作業을 주력하고 있는 砂金鑛에도 침투하여 들어갔다. 당시의 大韓每日申報나 皇城新聞을 보면 日本人들에 대한 鑛業許可 記事가 거의 매일같이 실리고 있었다. 1910年 5月 大韓每日申報에 “實業界의 韓日人競爭”이라는 記事에서 파악한 地方別 韓日의 鑛業許可件數는 다음과 같다.<sup>14)</sup>

地方	韓人	日人
京畿道	7	16
忠 南	7	32
忠 北	7	35
全 南		3
全 北		9
慶 南	3	67
慶 北	6	33
黃海道	11	25
江原道	8	13
平 南	16	45

13) 『皇城新聞』 1910年 5月 28日字에 보면 日人들이 점차 韓國鑛山을 독점하는 것에 우려하며 韓國人들이 利益配當을 계약하려다가 기본권리마저 빼앗기는 사례가 빈번함을 지적하고 있다.

14) 『大韓每日申報』 1910年 5月 4日字.

平 北	70	81
咸 南	10	28
咸 北		12
計	145	399

위에서 보던 金鑛이 雲集한 平北이 가장 많은 것과 특히 日本人들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合邦직후인 1910年 9月에는 日本人들이 차지한 鑛區數가 790 處로 증가하였다.<sup>15)</sup>

### 3. 日帝初期 鑛業權侵奪의 諸樣相

1910年 合邦직후 朝鮮總督府는 두가지 主要한 經濟法令을 發布하였다. 그 하나는 土地調査令이고, 다른 하나는 朝鮮會社令이다.

먼저 總督府는 1910年 12月에 朝鮮會社令을 公布하였는데 그 내용은 朝鮮에서의 會社設立 및 朝鮮의외에서 設立된 會社가 朝鮮에 支店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朝鮮總督府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會社設立에 許可主義를 채택한다는 것이며 그 목적은 朝鮮內에서의 近代工業建設을 견제하자는데 있었다. 즉 朝鮮을 日本工業에 대한 原料供給地요 商品販賣地로 개발한다는 것이었다.<sup>16)</sup>

한편 土地調査令은 1912年에 發布되었는데 이 法令에 의해 朝鮮總督府는 8年에 걸쳐 全國土의 細部測量을 단행하였다. 이 調査事業에서 日帝는 전체 耕作지의 12.3%와 全體林野의 58%를 朝鮮總督府에 편입시켰다. 이러한 방대한 朝鮮總督府 土地와 山林은 日本의 朝鮮統治에 있어 主要財源이 되었고 또 朝鮮에 진출하는 日本人에게 그 일부는 헐값으로 불하되

15) 『每日申報』 1910年 9月 11日字.

16) 이 會社令은 1910年 12月 29日字 制令 제 13호로 發布하였는데 全文 20條로 구성되었으며 다음해 1月 1日부터 시행하였다. 그후 1920年 4月 1日字 制令 제 7호로 폐지되었다. 孫禎陸, 「會社令研究」, 『韓國史研究』 45집, 1984, pp. 87~130 참조.

어 그들의 經濟活動 기반을 닦아주었다.<sup>17)</sup>

앞에 두 法令의 公布는 日帝의 朝鮮鑛山界 침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1915年末 日帝는 朝鮮鑛業令을 公布하게 된 것이다. 日本鑛業者들의 朝鮮鑛山에의 진출을 위한 기초 준비는 이미 統監府 時代에 시작되었으나 그 본격적인 침투는 合邦後에 적극화될 수 있었다.<sup>18)</sup>

日帝는 1906年 鑛業法 公布以後 特許받은 鑛山은 많지만 정작 採掘에 착수하고 있는 곳은  $\frac{1}{6}$ 에 불과한 사실을 파악하고 植民地상황으로 바뀐 시점에서 日本人 資本家의 朝鮮鑛業進出에의 活路를 적극 모색하였다. 日本은 그동안 鑛業이 부진했던 원인으로 資本의 취약함과 義兵의 봉기로 인한 각지의 治安狀況의 불안과 교통의 마비, 또한 近代式기술의 미숙함을 파악하고 그 극복책을 시도하였다.

우선 日本에서 전문 鑛山技師를 데려다가 세밀한 鑛山調査를 실시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調査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有望한 鑛脈을 探知하기 위한 작전이었고 日本人 資本家를 朝鮮鑛山 開發에 참여시키기 위한 情報 作成이었다. 특히 그들은 대대적인 鑛山調査를 통해 실제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鑛山은 外國人이 所有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당시 外國人 鑛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곳은 平安北道 雲山(美人), 昌城(佛人), 厚昌(伊太利人), 宣川(獨逸人), 龜城(英國人), 咸境南道 甲山(美人), 黃海道 遂安(英人)鑛山으로 되어 있다.<sup>19)</sup>

그 중에서도 平安北道가 가장 매장량이 풍부한 광산이 산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집중 探查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砂金鑛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

17) 『毎日申報』 1911年 5月 9日字, 6月 8日字, 9月 12日字

18) 『毎日申報』 1911年 3月 7日字, 5月 24日字, 5月 28日字, 6月 3日, 6月 29日, 9月 16日字. 朝鮮總督府 農商工部, 『朝鮮鑛產地』, 京城, 1911, pp. 160~70. 전국적인 鑛床調査와 함께 各國人鑛業實態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19) 『朝鮮總督府施政年報』 大正元年度.

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였다. 1911年 9월에 各國人 鑛業別 統計를 보면 다음과 같다.

	鑛業	砂鑛業
朝鮮人	180 件	201 件
日本人	350 件	127 件
韓日人共同	24 件	28 件
英國人	24 件	28 件
美國人	18 件	3 件
日美人共同	1 件	
獨逸人	7 件	
佛人	1 件	1 件
韓美人共同	1 件	

위에서 보면 日本人이 차지한 砂金鑛도 상당수 파악되고 있다.

日帝는 1910年 末 會社令을 公布하면서 三井, 三菱, 澁澤 등의 日本人財閥에 대한 韓國鑛業 開發을 유도하고 朝鮮人 民族資本에 의한 鑛業會社 設立을 견제하였다. 또한 이미 기존 광업허가를 획득한 朝鮮人 鑛業家에 대해서도 資本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低廉한 가격으로 買收하여 日本人에게 轉賣하게 하였다. 나름대로 朝鮮에 와있는 日本人들로 하여금 資金을 모아 鑛業會社를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하였다.<sup>20)</sup>

한편 朝鮮 植民地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朝鮮人 鑛業者들을 공공연히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鑛業法에 違反되는 행위를 했다해서 막중한 罰金을 부과하는 事例가 빈번하였다.<sup>21)</sup> 뿐만 아니라 朝鮮人이 이미 획득한 광산을 처음에는 共同經營하자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끝내는 계약을 써서 기본 권리마저 빼앗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日帝初期에는 수많은 鑛業爭訟이 各鑛山에서 야기되고 있었다.

日本人들의 불법적인 朝鮮人 鑛山 侵奪事例를 몇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20) 『每日申報』 1911年 9月 8日字.

21) 『每日申報』 1911年 8月 23日字. 平安北道 雲山郡에서 採取權을 인정 못하고 砂金을 採取한 朝鮮人 德大 7명에게 朝鮮總督은 罰金 50圓을 부과하였다.

같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平安北道 朔州金鑛에서는 韓人 鑛業主 金龍柱와 日本人 岩永浩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었다. 朔州金鑛은 朝鮮의 金鑛 중 三大에 들 정도로 유명한 광산으로 당시에는 수천명의 鑛夫들이 鑛業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鑛山의 有望함이 소문이 퍼지자 日本人들이 우선 눈독을 들이게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1911年 每日申報 記事에 보면

朝鮮人の 所有되던 平北 朔州의 城野金鑛을 今春에 日本人 某가 十數萬圓으로 買收한 以來로 同方面의 金鑛이 극히 有望하다고 喧傳이었는데 此等結果로 內地 鑛業家の 注意를 惹起하여 昨今間, 古川・久原・外村・神田等の 各鑛業家は 伊藤, 北川, 小林, 佐藤, 福地等 各 技師를 派遣하여 朔州及 昌城附近을 極히 注意中이라더라.<sup>22)</sup>

라고, 日本人들의 朔州金鑛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日本人 某가 바로 岩永浩라는 者였다.

원래 朔州金鑛은 金龍柱가 先代부터 採掘하던 것으로 1906年 鑛業法이 公布되자 出願申請의 절차를 몰라 친구 張補洪에게 위임한 것이 그만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張補洪은 원래 鑛業開發에 의사없이 권리만 얻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日本人 岩永浩에게 金龍柱 몰래 16만원에 팔아 넘겼다. 이에 岩永浩는 金龍柱의 持分도 헐값에 사들이려는 계략을 써서 단돈 일만칠천원에 변호사를 통해 교묘히 金龍柱 몰래 매수하였다. 그러자 金龍柱가 이를 항의하여 分爭이 심화되었다.<sup>23)</sup> 여기에 韓國人 鑛夫들도 합세하여 日本의 부당함에 저항하였다. 오랫동안 訟事가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總督府에서는 金龍柱의 鑛業權을 보호하기는 커녕 두 사람의 공동경영 명의를 취소하고 이 鑛業權을 日本人 淺野總一郎과 荒井初太郎에게 이전시켜버려 결국은 日本人의 소유로 넘어간 것이다.<sup>24)</sup>

22) 『每日申報』 1911年 6月 2日字 「朔州金鑛의 調査」.

23) 『每日申報』 1913年 2月 15日, 2月 18日字.

24) 『每日申報』 1913年 6月 3日字.

平安南道 順安金鑛은 淺野總一郎이 合邦직후부터 砂金採取作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곳이다. 日本人들은 砂金採取 作業으로 農土를 침해하여 現地農民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그러나 總督府 殖産局의 대도는 鑛業으로 인한 收益은 一坪에 20圓이고 農作物은 年收穫으로 이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砂金採取를 독려함이 마땅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日本人의 입장에서 이득이지 農民들의 生計를 보장해주는 일은 아니었다.

이와같이 淺野總一郎은 總督府의 보호를 받으며 순조롭게 砂金採取 作業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가 생산한 金은 1912年 당시 평양에 출하된 金의  $\frac{1}{3}$ 을 점유하고 있었다. 점점 매장량이 풍부하여 수익을 올리게 되자 德大制度를 폐지하고 日本人 독점체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이에 1913年 李明淳을 비롯한 朝鮮人 德大 13名과 朝鮮人 鑛夫들이 합세하여 분요가 일어났다. 당시는 1년에 1百萬圓을 산출하고 광업종사자도 日人 200명 朝鮮人 1700여명의 대규모 鑛山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sup>25)</sup> 淺野總一郎은 이곳 외에도 많은 砂金鑛을 장악하고 있었다.<sup>26)</sup>

平安北道 昌城金鑛은 원래 1901年 佛人 「살타렐」(M. Saltarel: 薩泰求)이 特許를 받은 광산이었다. 그러나 鑛地가 정식 확정된 시기는 1907年 이었고 鑛區選定은 1909年에 이루어졌다. 昌城郡內에 2個 鑛區를 선정하였는데 南部區域은 東倉面의 대부분과 大倉面, 靑山面의 各 1部를 鑛地였고 北部區域은 昌城郡 祐面의 1部 및 南倉面의 全部를 차지하여 鑛區의 총면적이 1億 2千萬坪에 달하였다.<sup>27)</sup>

昌城金鑛중 南部 東倉面은 美國人이 特許權을 차지한 雲山金鑛의 北鑛

25) 『每日申報』 1912年 10月 3日, 1913年 9月 30日字. 順安金鑛은 砂金地로서 매우 오래된 有望한 곳이다.

26) 당시 砂金地로서는 稷山, 順安, 寧邊이 産金量이 매우 우수하였는데 이 모두 淺野總一郎이 경영을 주관하던 곳이다.

27) 『農商工部來去文』, (奎) 177782, 光武 11年 3月 5日, 13日, 4月 18日, 7月 6日. 『制度局鑛業書類』, (奎) 21935, 照會 第223號 光武 11年 7月 6日 『日韓外交資料集成』 第8卷, p. 208.

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원래 昌城郡은 平安北道에서 중요한 產金地로 雲山郡과 함께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高麗時代와 朝鮮時代에는 砂金を 採取했던 形跡이 있고 地質은 花崗岩類이다.<sup>28)</sup>

1910年 8月 東倉面 大楡洞에서 대규모 良質의 鑛脈을 발견하여 임시로 德大式에 의거하여 稼行하였는데 1912年 1月부터는 「롱동」(L. Rondon: 龍洞)이 전담하여 經營하였다. 大楡洞鑛이 양호한 성적을 올리자 事務所와 製鍊所도 설치하였다. 당시 그곳의 인구는 3千名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광부는 약 2500여명이 각지에서 모여들어 조업을 하였다.<sup>29)</sup>

그런데 이 佛人 昌城金鑛에서 德大制度를 폐지하면서 韓國人 鑛業者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1910年부터 金相德 등 德大에 위임하여 채굴한 鑛脈에서 金이 쏟아져 나오자 채굴 계약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금액 51,000여원에 해당하는 鑛石 130200여 부대를 강탈해 간것이다. 뿐만 아니라 韓人들이 투자한 시설비도 주지않고 德大制度를 폐지하였다. 이를 항의하는 광부들의 투쟁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佛蘭西의 의도대로 德大制度는 아무 보상없이 폐지되었다.<sup>30)</sup> 오히려 1912年 5月에는 日人 安川敬一郎이 昌城의 10여개 鑛區를 허가받고 180여만원을 투자하여 적극적인 採掘事業에 착수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佛人鑛山과 日人鑛山은 번창하여 호황을 누렸다. 그 일대의 重石鑛도 日本 山口鑛業所에서 채굴하였다.<sup>31)</sup>

平安北道 龜城鑛山은 원래 英國이 殷山金鑛에 대신하여 特許받은 곳인데 鏡作 採掘에는 착수하지 않아 各處에서 鑛夫 수천명이 雲集하여 暗採

28) 松田繁·笹尾正一, 『韓國鑛業調査報告』(平安道), 「昌城金鑛」, pp. 53~56, 統監府, 1906. 朝鮮總督府 殖産局, 『朝鮮の金銀鑛業』, 「昌城鑛山」, 1919, pp. 98~106. 朝鮮總督府 殖産局, 『朝鮮の鑛業』, 1924, pp. 30~31.

29) Mutel 文書(韓國教會史研究所所藏), 1914年. 昌城大楡洞聖堂「뎡」(J. Meng, 明) 神父와 「뮤텔」主敎 사이에 오고간 서한문에는 鑛山實態에 대해 자세히 수록하고있다.

30) 『每日申報』 1911年 12月 6日, 1913年 2月 18日 日字.

31) 『每日申報』 1912年 5月 16日, 6月 29日. 1913年 10月 3日. 1914年 11月 8日, 1916年 12月 27日 日字. 日帝時代 昌城金鑛은 雲山 遂安동과 함께 外國人이 採掘하던 곳으로 매우 收益量이 풍부하였던 곳이다.

단 성행하고 있었다. 1911년까지만 해도 朝鮮人, 日本人, 外國人들이 다 두어 出願하였고 鑛山課에서 심사를 실시하여 결국은 1912年 古川市에게 鑛業權을 부여하였다.<sup>32)</sup> 이미 1年前부터 古川鑛業所는 全國鑛山 鑛物을 探查하여 龜城鑛山의 유망함을 감지하고 總督부에 은밀히 교섭을 벌인 결과였다.

咸鏡北道 甲山鑛山은 1900年代 후반부터 日本을 위시한 美國, 英國, 伊太利 鑛業者들이 調査하고 鑛業申請을 出願하였던 곳이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韓國政府에서는 宮內府所屬이라는 이유로 許可할 수 없다는 종래의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단지 「콜브란」(骨佛安: Collbran)의 鑛業會社에 위임하여 대리경영을 통해 皇室收入을 확보하다가 1908年 결국 「콜브란」에게 特許하였다.<sup>33)</sup> 「콜브란」은 1910년부터 본격적인 探鑛에 착수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1913년부터는 日本의 大版·久原鑛業會社에서 買收할 계획으로 교섭을 추진하였다. 買入가격으로 상호간에 設왕설래하다가 1916年 300만원으로 낙착되어 완전히 日本人 久原鑛業會社가 인수하였다.<sup>34)</sup> 그런데 1893년부터 甲山銅鑛에서 探掘하던 崔永大와 火煎鐵에 대한 인도 소송이 해결되지 않아 30萬圓의 배상금 청구소송이 걸려 있었다. 즉 콜브란은 1909년부터 火煎鐵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미루어 온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1918년에야 崔永大가 콜브란 鑛業會社로 부터 48,508원을 받고 매듭지어졌다. 약 10년에 걸친 오랜 세월 동안의 爭訟이었는데 그 보상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었다.<sup>35)</sup>

32) 『每日申報』 1912年 10月 23日. 1911年 9月 8日. 9月 23日字.

33) 『日本外交文書』 38~1 文書番號 679, 682, 683 『統監府來去案』, (奎) 17850, 1906年 11月 6日. 『制度局鑛業書類』, (奎) 21935~8, 1906年 6月 28日. 『甲山鑛山の 探掘을 讓渡하는 契約書』, (奎) 23214, 23213. 1908年 6月 15日.

34) 朝鮮總督府, 『朝鮮の鑛業』, 京城, 1924 pp. 25~30.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大正 3年~5年(鑛業)편 『每日申報』, 1916年 5月 4日, 5月 12日字.

35) 『每日申報』 1915年 8月 17日, 1916年 7月 4日, 1918年 11月 3日字.

이상에서 살펴본 事例이외에도 植民時代 韓國人 鑛業者들의 피해는 이  
 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이 시기 日人들의 韓國鑛山 侵  
 奪의 특징은 砂金鑛까지 불법으로 장악하여 이득을 올린 것이며 재래식  
 德大制度를 폐지하여 직접 경영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중래의 전통 광업  
 양식을 붕괴시키는 전초작업으로 韓國人 鑛業家들의 資本축적을 근원적으  
 로 봉쇄해버린 결과가 되었다.

年度別 鑛業許可件數<sup>86)</sup>

	日本 人	朝鮮 人	朝日 共同	英國 人	美國 人	美日 共同	朝美 佛人	伊人	露人	獨逸 人	合計		
1910	383	324	50	7	17	1	2	2	2	0	5	791	
1911	489	343	39	5	25	4	1	2	2	1	5	914	
1912	612	369	51	5	31	2	1	2	2	1	6	1080	
1913	684	348	46	5	30	0	0	2	2	1	2	1118	
1914	鑛業	661	275	39	5	19	0	0	2	1	1	2	1004
	砂鑛	82	128	21	0	16	0	0	0	1	0	0	247
	合計	743	403	60	5	35	0	0	2	2	1	2	1251

#### 4. 1915年 鑛業令 公布와 그 影響

日本人들은 合併後 이전에 그들이 주도해서 1906年 制定했던 鑛業法の  
 改正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全國의인 鑛山調査를 체계적으  
 로 실시하였다.

1911年 9月 『每日申報』에 실린 「鑛區調査의 進捗」이라는 記事를 보면

今年度の 鑛區調査는 僅히 一箇月前부터 着手하였는데 爲先 最히 鑛區가 多  
 고 且世人이 注意하는 方面으로부터 始하여 漸次 稀薄한 區域에 移코져하는 計  
 劃인디 元來 朝鮮의 鑛區中 六割은 元山以北의 北朝鮮에 多호니 卽平安南北道,  
 黃海道及 咸鏡南道等이라, 平南의 中部에서는 鐵及金을 産호고 平北西部에는 金

3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施政年報』大正 4年 「鑛業」, p. 267.

及黑鉛을 産하고 咸南의 定平以南에는 金을 産하니 是等の 採掘者는 大矣朝鮮人과 少數의 日本人이 有하니 皆朝鮮式的 經營에 屬하야 其規模가 甚少하니 差現今問은 不得已호마이어나와 其中日本人의 試掘에 從事호는者도 專門的知識을 有호者 無호야 一獲千金의 利益을 是賃호고 到底히 新器械를 使用호 實力이 有호者는 無호야 失敗호는者 往往호故로 朝鮮의 鑛業은 所望이 無호다는 流言이 百出호야 內地에 資本家도 投資호를 不好호는 影響도 不無호다나디……<sup>37)</sup>

라 하여 시설미비로 취약한 朝鮮鑛業實情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平安南道, 咸鏡南道, 平安北道, 黃海道 順으로 하여 調査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 鑛山調査 事業은 總督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는데 그것을 담당한 鑛山技師는 日本에서나 또 舊韓末때 부터 韓國鑛山을 調査한 경험과 여러 차례 보고서도 작성하였던 專門家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치밀한 鑛山調査는 물론 적극적으로 日本人들을 韓國 鑛業開發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이에 자연히 以前에 제정된 鑛業法이 당시 植民地化된 상태에서 적합치 못한점이 많음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1906年의 鑛業法에서는 日本人들이 外國人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內外國人의 차별을 철폐하였던 것인데 이제 日本人들이 內國人化된 현실에서는 우선 이 국적부분을 改正할 필요성이 시급하였던 것이다. 서서히 總督府에서는 朝鮮鑛業法의 改正方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sup>38)</sup>

그러자 이제 다시 立場을 바꾸어서 現在 日本의 鑛業法에는 外國人의 鑛山採掘權을 허용하지 않는데 유독 朝鮮에서만 外國人의 권리를 인정함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불과 몇년전에만해도 朝鮮 鑛業의 發展을 위하여 內外國人의 차별을 철폐함이 마땅하다고 力說하였던 그들이었음을 보면 1906年 鑛業法制定은 日本人들의 독점권 강화술책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또 한가지 日本人들이 鑛業法 改正을 시급하다고 강조한

37) 『每日申報』 1911年 9月16日字.

38) 『每日申報』 1911年 4月 5日, 9月 8日字. 1911년부터 日人鑛業家의 朝鮮 鑛山시찰이 빈번해지면서 朝鮮의 鑛業條例 改正說이 거듭 거론되고 있다.

부분은 宮內府 所屬 鑛山의 처리문제였다. 以前에 宮內府에 소속되었던 鑛山이 이제 一般鑛區와 같이 취급되었으니 무방비한 상태로 놓아두면 技術과 資本이 우세한 外國人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음을 거론한 것이다.

즉 有望한 鑛區가 外國人에게 장악됨을 막기위하여 이를 견제하는 鑛業法의 改定과 이들 資本에 대항할 수 있는 日本資本家들의 韓國鑛山에의 투자를 유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總督府의 鑛山開發 諸般事業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sup>39)</sup>

1913年 4月 집약된 日本人 大鑛業家의 朝鮮鑛山 採掘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古河組에서는 龜城郡金鑛에 약 200명의 抗夫를 使用하여 抗道를 掘鑿하고 探鑛에 努力中이오 安川은 昌城에서 同上의 作業을 開始하고 三蘆에서는 來七八月頃부터 兼二浦에 製鐵所設計를 爲할터이오 宣川의 金鑛은 加藤萬四郎氏 泰川郡의 金鑛은 掘三太郎氏 등이 皆今春부터 探鑛에 着手하고 安川의 安州炭鑛은 月下捲上器械를 掘付하여 探鑛을 爲하고 三井의 价川郡에 對한 鑛山은 施策에 關하여 考案中인데 今後 兩三年間을 皆如此한 狀態를 持續할터이나 其後에 至하여 本事業에 愈愈히 着手할 時는 朝鮮의 鑛業界도 前에 一大發展을 見함에 至하리라.<sup>40)</sup>

이렇듯 많은 日本人 鑛業家들이 朝鮮에 진출하면서 그들은 상호간의 권익옹호를 위해 鑛業協會를 조직하게 되었다. 그들은 상호협조, 정보교환, 교섭의 원단을 목적으로 1913年 6月 朝鮮鑛業協會를 설립하고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그 규칙은 다음과 같다.<sup>41)</sup>

- ① 會員의 意見수렴.
- ② 每月 一回내지 二回 鑛業會報 發行.

39) 『每日申報』 1911年 5月 9日字. 「朝鮮의 經濟談」, 7月 5日字. 「朝鮮金鑛의 將來」.

40) 『每日申報』 1913年 4月 19日 「朝鮮鑛業의 前途」 1911年 10月 24日字에도 日人경영의 대표적 광산을 기술하고 있다.

41) 『每日申報』 1913年 3月 1日, 7月 13日, 6月 28日字.

- ③ 朝鮮鑛業에 관한 法規, 學術, 實務를 計究하여 一般의 諮問에 응함.
- ④ 會員의 의뢰에 의한 各種鑛業調査.
- ⑤ 鑛業에 관한 一切 人事의 仲介 및 분쟁·和解 등의 의뢰에 응함.
- ⑥ 鑛業權의 매매 및 기타에 관해서 會員의 의뢰가 있을 때 照會에 응함.
- ⑦ 鑛業出願 수속의 대리역과 측량, 제도, 감정 등의 의뢰에 응함.
- ⑧ 朝鮮 各種鑛石의 분석표, 賃率表 등을 만들어 참고에 제공함.

이에 會員은 명예, 특별, 보통으로 구분하여 회원신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日本人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朝鮮鑛山을 침투해 들어왔을 뿐 아니라 鑛山시찰을 하는 日人 鑛業家의 수도 부쩍 늘어나게 되었다.

1914年에는 日人 鑛業家 10여명이 資本金 300萬원을 모아 金鑛製鍊株式會社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sup>42)</sup> 또한 三井鑛山會社에서는 자체내에서 도 朝鮮鑛山 開發에 적극 투자할 뿐아니라 자본이 취약한 日本人에게는 鑛石을 담보로 하여 저렴한 金利로 상당한 가격의 대출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기술대여도 추진하여 銀鉛鑛에 대한 分析은 三井鑛山會社 技師를 파견하여 助力할 것임도 밝혔다. 이는 日人 鑛業者에게 投機的 위험을 감소하게 하여 적극 開發을 유도하려는 처사였다.<sup>43)</sup>

이제 1915年에 이르면 어느정도 日本人들이 韓國鑛山에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더욱 이를 확고히 해주는 鑛業法의 改正事項에 대한 검토도 거의 완료되었다. 이 鑛業令 改正과정에서 가장 오랜동안 논의가 계속되었던 문제는 첫째, 外國人 鑛業權에 관한 件과 둘째, 先願後願에 관한 件 셋째, 德大에 관한 件이었다.<sup>44)</sup>

그런데 우선 外國人 鑛業權 문제에 있어서는 本店을 朝鮮에 두지않은 경우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本店所在地의 재판에 의해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이 크게 단점으로 거론되었다. 둘째 先願後願의 문제

42) 『每日申報』1914年 1月 17日字.

43) 『每日申報』1915年 8月 21日字「鑛業의 開發」.

44) 『每日申報』1915年 11月 22日字「鑛業令의 改正」.

는 종래 出願順으로 鑛業權을 허가했는데 이제 出願者의 人物如何에 의해서 認定 許可의 方針을 취할 것으로 의견이 집중되었다. 셋째 德大에 관한 件으로 德大는 亂掘을 助長한다는 이유로 폐지할 것이 확정되었다. 이 모두 日本人들에게 조금이라도 不利했던 점을 모두 제거하고 완전 독점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드디어 1915年 12月 26日 改正된 鑛業令이 公布되었다. 이 鑛業令이 종래 1906年의 鑛業法과 다른 특징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sup>45)</sup>

먼저 鑛業名의 增加를 들 수 있다. 1906年의 鑛業法 및 砂鑛採取法에 규정된 광물은 金鑛, 銀鑛, 銅鑛, 鉛鑛, 錫鑛, 安質母尼鑛, 水銀鑛, 亞鉛鑛, 鐵鑛, 滿俺鑛, 黑鉛, 石炭, 硫黃, 砂金, 砂錫 및 砂鐵의 17種이었는데 朝鮮鑛業令에는 蒼鉛鑛, 硫化鐵鑛, 格魯謨鐵鑛, 重石鑛, 水鉛鑛, 砒鑛, 土瀝青, 雲母, 石錦, 高嶺土 및 硃石의 11種을 추가하여 合計 28種이 되었다. 이 11種의 추가 鑛物에 대하여는 종래 그 광물을 包藏한 土地所有者의 處分權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고로 一般 行政規則 아래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國有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 개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게 하였다.

한편 砂金, 砂錫 및 砂鐵은 종래 砂鑛採取法으로 지배하였으나 1915年 朝鮮鑛業令에는 이들 鑛物을 포함시키고 砂鑛採取法을 폐지하였다.

새로이 증가된 鑛物에 대해서는 新令에 의한 許可規定에 따르게 하였으며 기존 鑛業權은 6개월의 기한을 주어 계속할 수 있게 하되 그 기한내에 出願申請을 하면 到達日의 先後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음 國有鑛에 대해서는 종래 鑛業法의 지배를 받지 않던 것을 새로이 鑛業令에서는 國有鑛도 적용되게 하였으며 朝鮮總督의 管理에 있는 鑛業에 대해서는 鑛產稅 및 鑛區稅의 적용을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自己의 營業에 대하여 課稅할 必要가 없음을 들었다.

45) 『朝鮮法令輯覽』下-1, 第17輯 產業 第三章 鑛業 朝鮮鑛業令 大正四年 12月 制令 第八號. 이 鑛業令은 1916年 4月 1日부터 施行되었다.

특히 外國人의 鑛業權 부분에서는 종래 鑛業法에는 均等한 享有의 기회를 주었는데 新令에서는 금지하였다. 즉 外國人 및 外國法人의 鑛業權 許可를 금지하였고 이 施行規例 以前의 鑛業權만 인정하였다.

한편 鑛業出願 許否규정은 同一地에 대하여 同一鑛物의 鑛業出願이 2人以上일 경우 朝鮮總督府에 最先願書의 到達한 것에 대해 許可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高嶺土(輸出陶器 원료), 珪砂(硝者의 製造原料)의 경우는 장려할 鑛業의 특수경우로 朝鮮總督府가 적당한 經營자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또한 鑛業出願地와 鑛區의 訂正(增減의 경우) 出願도 到達主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새로이 증가된 鑛物도 그 土地所有者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적용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朝鮮鑛業令 施行以前부터 朝鮮總督府에서 조사를 위해서 보류한 尙州·義州·新興·順川, 价川의 金鑛 및 無烟炭地域, 舊宮內府所屬 地域은 별도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 하였다. 아울러 鑛業出願人의 변경도 가능케 하였다.

金鑛을 목적으로 한 鑛業權者도 그 金鑛區內에 砂金鑛區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砂金採取權을 出願하지 않아도 採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日本人들의 砂金採取作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다.<sup>46)</sup>

鑛業權의 概念에 대해서는 鑛業權을 物種으로서 不動產에 관한 규정을 準用하였다. 종래에 비해서 한층 그 권리가 확대된 것이다. 그리하여 鑛業權의 登錄制度를 設定하고 對抗條件과 더불어 有效條件이 되었다. 鑛業權의 處分範圍는 相續, 讓渡, 抵當, 滯納處分 및 強制執行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한편 共同鑛業權者의 權利關係를 분명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共同經營者간의 분규·쟁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共同鑛業權의 성격을 구분하기를 數人이 共同으로 鑛業出願을 하여 허가받은 경우

46) 日本人들은 특히 合邦後 이 砂金鑛業에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왜냐하면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收益을 올릴 수 있는 鑛種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砂金採取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도 鑛業法의 改正이 시급하였던 것이다.

數人の 遺産相續人이 鑛業權을 계승한 경우, 數人이 共同으로 鑛業權을 讓渡받은 경우로 이 모두 事業上 關係를 組合契約으로 한 것만 간주하였다. 아울러 共同鑛業權者의 持分의 限계를 분명히 하였다.

鑛業權 消滅의 경우에 대한 抵當權의 보호규정에 대해서는 競賣完結日까지 競賣目的의 범위내에서 鑛業權의 존속을 인정하였다. 종전에는 鑛業權이 소멸된 경우 그 광업권의 계승을 出願함을 얻는 것으로 抵當權者를 보호하였으나 둘 이상일 경우 그 처리가 애매하였으므로 新命은 경매에 의한 賣得金을 順位에 의해 分配함을 원칙으로 하여 저당권자가 맡은 경우도 별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다음은 鑛業上 필요한 土地의 使用 및 收用이니 특정의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민이 土地의 買收를 청구하는 권리를 인정함은 전과 같았다. 그런데 舊法에는 鑛業權者에게 土地買收의 청구권을 使用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토지의 貸渡를 청구함에 불과하며 賣渡를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오히려 土地所有者로 부터 특정의 경우 買收를 강요당하는 의무를 져야 했다. 이에 新命에서는 鑛業이 國家經濟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여 鑛業權者가 어느 정도 土地使用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土地買收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다음 鑛業稅의 부분을 보면 鑛產稅와 鑛區稅의 두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鑛產稅는 광산물 가격의 1/100로 종전과 같다. 鑛產稅는 千坪 또는 河床延長 一町마다 1個年 60錢으로 하였다. 종래에 비하면 10錢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砂鐵은 종래 無稅였는데 이제 다른 砂鑛과 같이 과세하였다.<sup>47)</sup>

한편 特許鑛區로 인정하는 광산은 雲山, 遂安, 昌城, 厚昌, 稷山 및 甲山의 외국인 광산으로 종래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위의 鑛業法을 어겼을 경우 罰則조항이 크게 달라졌는데 종래는

47) 이 鑛產稅의 규정은 1918年 다시 과세를 하지 않는 방침으로 바뀌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해부터 日人들의 鑛業權소유는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鑛業法の 처벌은 行政官處에 의하였으나 이제는 司法處分으로 강화하였다. 즉 종래 舊法은 광업권 허가없이 채굴에 종사한 자에 대해 50圓이상 千圓이하의 벌금정도였는데 新令은 二年以下の 징역 또는 千圓以下の 벌금에 처하기로 개정되었다.

이 法令의 實施以後부터 日人이외의 外國人 鑛業은 점점 쇠퇴하여 가는 반면 日人鑛業은 성황을 이루었다. 당시 제 1차 세계대전의 영향에 의하여 鑛產物가격이 급등하고 韓國鑛業은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에 日本의 有力鑛業家중에 鑛業을 대규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久原鑛業會社가 熔融製鍊所를 鎭南浦에 創立하고 合名會社 鈴木商店이 鷺梁津에 製鍊所를 設置하고 稷山에서는 처음으로 砂金船에 의한 대규모 操業이 개시되었다.<sup>48)</sup> 이에 日本은 韓國鑛業을 거의 독점적으로 개발하여 日本의 國內工業을 위한 원료와 화폐가치의 안정을 위한 金·銀을 제공하였다. 다음에 日帝初期와 鑛業令 公布를 前後한 内外人 鑛產物 生産額과 그 比率를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sup>49)</sup>

年度	種別				일본인이 차지한 비율	한국인이 차지한 비율	외국인이 차지한 비율
	일본인	한국인	외국인	합 계			
1910	1,968,034	331,248	3,768,670	6,067,952	32.4%	5.5%	62.1%
1911	1,401,569	296,019	4,488,370	6,185,958	22.7%	4.8%	72.5%
1912	1,683,931	181,769	4,949,418	6,815,118	24.5%	2.7%	72.8%
1913	1,934,072	276,359	5,987,095	8,197,526	23.6%	3.4%	73.0%
1914	1,783,577	313,335	6,425,506	8,522,418	20.9%	3.7%	75.4%
1915	2,802,682	384,010	7,311,274	10,497,966	25.9%	3.6%	70.5%
1916	3,622,695	1,042,284	9,413,209	14,078,188	25.0%	7.0%	68.0%
1917	7,615,982	857,839	8,584,281	17,058,102	44.6%	5.0%	50.4%
1918	24,673,745	299,110	5,865,219	30,838,074	80.0%	0.7%	19.3%

48) 朝鮮總督府 殖産局編, 『朝鮮の金銀鑛業』昭和 4年(1929), 附錄 pp.23~28.

『朝鮮總督府施政年報』「鑛業の發展」, 大正 10年(1921), pp.247~248.

49) 『朝鮮總督府統計年報』大正 9年(1920), p.112. 韓昌浩, 「日帝下の 韓國鑛工業에 관한 研究」, 『日帝의 經濟侵奪史』,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1, p.179.

위에서 보면 점차 外國人의 위치는 저하되는 반면 日人들이 韓國鑛山을 장악하게 되었다. 外國人 鑛產額이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유한 鑛區數는 적지만 우수한 鑛山을 근대적 설비로 채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日人들이 거의 韓國鑛山을 독차지하게 되자 다시한번 그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鑛業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즉 1918年 金鑛, 銀鑛, 鉛鑛, 鐵鑛 砂金 및 砂鐵에 대해서는 이후부터 鑛山稅를 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특히 이 부분이 日人들이 장악하고 있던 鑛物이었다.<sup>50)</sup>

세계 제 1 차대전 이 끝나고 韓國鑛業이 不況을 맞게되자 鑛業獎勵를 위하여 鑛業法의 일부를 또 改正하여 1922년부터 鑛區稅는 鑛業權設定 登錄日 부터 起算하여 3개년은 半額으로 하였다. 또한 高嶺土 및 珪砂의 採掘出願 및 特定地域(朝鮮總督府가 資源開發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있어서 金·銅·鐵·石炭의 鑛業出願은 官의 自由裁量에 의하여 처리되던 것을 일반 원칙에 따라 先願者에게 鑛業設定을 허가하기로 하였다.<sup>51)</sup>

1926년에 또 일부를 改正하여 重晶石·螢石·蠟石·明礬石을 鑛業令중의 鑛物로서 추가하였다. 相當量이 산출되고 있던 이러한 鑛物은 鑛業令중에서 規程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國有地라면 土石採取 許可에 의하여, 民有地라면 買收하여 採掘하고 있었다. 아무리 유망한 鑛床이 있더라도 土地所有權者의 承認없이 는 그러한 主要鑛物을 採掘할 수 없으므로 法令 改正으로 鑛床을 전부 國有化하고 그 採掘은 鑛業權에 의하여만 가능하게 하였다.<sup>52)</sup>

50) 『朝鮮法令輯覽』, 下卷—1 「鑛業」.

51) 『朝鮮總督府施政年報』 「鑛業行政」, 大正 11年 (1922), pp. 266~268.

52) 『朝鮮總督府施政年報』 「鑛業」, 昭和 元年(1926), pp. 251~254. 韓昌浩, 「日帝下의 韓國鑛工業에 관한 研究」, p. 201.

## 5. 結 論

이제까지 日帝의 植民地化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韓國鑛業 侵奪에 대한 實態를 合併을 전후하여 10년 간격으로 制定된 鑛業法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1906年 統監府 時節 日本이 韓國政府로 하여금 發布하게한 鑛業法과 1915年 日帝治下 公布된 鑛業令은 본질적으로 日本의 韓國鑛業에 있어 植民地 獨占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였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그들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치고 收奪을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종래의 鑛業法과 改正된 鑛業令의 달라진 주요 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鑛業令에는 鑛物의 種類를 종래 17種에서 11種을 더 추가하여 28種으로 증가하였다. 그것은 日本人들이 鑛域을 확대하여 收益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었다.

둘째 종래 외국인의 차별을 철폐하였던 것을 改正하여 외국인의 鑛業權 취득을 금지시켰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植民地下에서는 日本도 內國人으로 되었기 때문에 外國人 資本을 배제하고 日本이 확고한 독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셋째 1906年에 砂金採取法을 폐지시키고 砂金採取는 出願하지 않아도 가능케 하였다. 이는 많은 日本人들이 合併後에 韓國으로 移住하면서 資本이 덜 들고 採掘하기도 손쉬운 砂金에 관심을 가지고 韓國全域에서 採掘을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종래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鑛業權의 概念으로 不動產에 관한 규정을 準用하였다. 이는 日帝의 당시 실시되던 土地調査事業과 제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鑛業權과 아울러 土地收奪도 겸하는 작전이다.

다섯째 재래식의 德大制를 폐지하여 韓人들의 기존 광업권을 말살하고 日人들의 독점경영 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다.

여섯째 鑛業法을 어겼을 때 罰則條項으로서 종래에는 行政處分에 그쳤으나 새로이 改正된 鑛業令에서는 司法處分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만일 日本人의 權利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時 가차없이 司法權을 발동하여 韓國人들의 저항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와같이 日帝는 合併前後 植民地 收奪體制를 확립하기 위한 法令을 公布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日人 資本家들로 구성된 鑛業協會, 鑛山會社, 鑛業會誌를 만들어 그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1910年代末에 이르면 鑛區數에 있어서나 鑛產額의 대부분을 日人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 反面 植民地下라는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기존 광업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韓人 鑛夫들의 저항과 民族資本으로 採鑛되는 鑛山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대상 鑛物의 종류도 다양하게 확대되어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韓人 民族資本에 의해 經營되는 鑛業實態와 日帝下 鑛業權 守護運動에 대해서는 稿를 달리하여 다루어볼 계획이다.